

주주님께

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일 시 : 2018년 3월 23일 (금요일) 오전 10시 00분
- 2. 장 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20번길 30-78 (파장동 19-4) 당사 회의실
- 3. 회의목적사항

- 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
- 2) 의결사항
 - 제1호 의안 : 제24기 (2017.01.01~2017.12.31)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내용 별첨 1)
 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내용 별첨 2)
 - 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 (내용 별첨 3)
 - 제5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 - 제6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

2018년 월 일
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20번길 30-78
 주 식 회 사 코 캄
 대 표 이 사 정 총 연 (직인생략)

위 임 장

대 리 인 :
 주 민 등 록 번 호 :
 주 소 :

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2018년 3월 23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코캠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위임함.

2018년 월 일

주 주 명 : (인)
 주 민 (사 업 자) 등 록 번 호 :
 주 식 수 :
 주 소 :

▣ 별첨 1. 정관 일부 변경(안)

현 행	변 경	비고
<p>제8조 (주식의 종류)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</p>	<p>제8조 (주식의 종류)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50%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권 없는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/4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	
<p>제9조 (이익배당,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)</p> <p>① 회사는 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 조에서 "종류주식"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전체 발행주식의 30%를 한도로 한다. 단,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의 15%를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.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% 이상 10%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.</p> <p>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률이 제3항에 따른 배당률보다 높을 시에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률의 배당을 한다.</p> <p>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.</p> <p>⑥ 상환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,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상환기간(또는 상환청구기간)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(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)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 (이익배당우선주식)</p> <p>①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(이하 "이익배당우선주식")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할 때 이사회 결의로 정한 우선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인 것으로 하거나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④ 회사는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인 것으로 하거나 또는 비누적이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/p>	
<p>제9조의2 (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)</p> <p>① 회사는 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 조에서 "종류주식"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전체 발행주식의 30%를 한도로 한다. 단,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의 15%를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.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% 이상 10%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.</p> <p>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률이 제3항에 따른 배당률보다 높을 시에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률의 배당을 한다.</p> <p>⑤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⑥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하되,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</p> <p>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</p>	<p>제9조의2 (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)</p> <p>①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(이하 "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")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할 때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분배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1주당 분배액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1주당 분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분배하는 것으로 하거나,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</p>	
<p><신설></p>	<p>제9조의3 (상환주식)</p> <p>①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주식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환가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 2. 상환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	

현행	변경	비고
	<p>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우선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.</p> <p>3. 그 외에 상환권의 행사 방법, 절차,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③ 상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게 상환주식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환가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 2. 상환청구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우선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된다. 3.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다.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 4. 그 외에 상환권의 행사 방법, 절차,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	
<신설>	<p>제9조의4 (전환주식)</p> <p>① 회사는 주주의 청구 혹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게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. 2.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3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. 4. 그 외에 전환권의 행사 방법, 절차, 효력, 전환조건, 전환비용 및 전환가액의 조정 등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<p>③ 제2항에 따라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3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
<p>제11조 (주식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<p>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<p>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</p>	<p>제11조 (주식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<p>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<p>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</p>	

현행	변경	비고
<p>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호, 제2호, 제2호의 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</p>	
<p>제11조의3 (신주의 배당기산일)</p> <p>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1조의3 (신주의 배당기산일)</p> <p>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
<p>제51조의2 (중간배당)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하여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<p>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.</p>	<p>제51조의2 (중간배당)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하여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<p>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

▣ 별첨 2. 사외이사 후보자(1명)에 관한 사항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비고
	추천인				
오성중	53.12.19	서울대학교원 경제학과 리처치에이플러스 연구본부장 루트제이드 비상근 감사 (현재)	없음	없음	신임
	이사회				

▣ 별첨 3. 감사 후보자(1명)에 관한 사항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비고
	추천인				
김종각	55.02.24	순천공고 상경물산(주) 상무이사 (주)코캠 감사 (현재)	없음	없음	연임
	이사회				